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대 및 용도 추가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23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대 및 용도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제11호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6.

다.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대 및 용도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제11호 신설)

개정안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연법」에 따라 공연 입장권등 부정거래에 따라 납입된 몰수 또는 추징금, 「저작권법」에 따라 출연되는 미분배 보상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아울러, 기금의 용도로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호·제1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공연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납입된 몰수 또는 추징금
<신설>	6.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제8호

현행	개정안
<u><신설></u>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10. (생략)	<u>에 따라 출연된 미분배 보상금</u>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문화예술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u> 11. <u>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공연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u>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현행법 제16조¹⁾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7조²⁾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① 정부의 출연금, ②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③ 기금 운용 수익금,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납입받는 출연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범위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행법 제18조³⁾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미술작품 진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경비 등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개별 사업에 국한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종합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거 공연·전시 관람료 등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⁴⁾으로 해당 부담금이 폐지된 이후 자체 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음.

3)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4)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이에 따라 현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⁵⁾에 따른 복권기금 배분금, 「경륜·경정법」 제18조⁶⁾에 따른 수익금 배분금, 일반회계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경륜·경정법」

제15조(발매이익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입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임.

이러한 재원은 복권 판매량이나 경주 수익금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기금의 수입 규모가 달라지고,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입금 규모가 결정되는 한시적·유동적 편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연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문화예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공연법」 제42조의27)에 따라 공연 입장권등 부정구

「정류·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5123, 2026.1.29., 본회의 의결)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부과되는 몰수 또는 추징금,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8)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8)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

제23조제1항9)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개정안과 함께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 제7항·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1)¹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4)¹¹⁾,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2)¹²⁾이 함께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 및 내용에 따라 개정안 역시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집행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1호)

제42조의2(몰수·추징) ①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4호)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2호)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43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발생하는 수익과 제재금이 다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정으로 환류 되도록 하는 한편,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법정 배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재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규정에 문화예술 분야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과 공연산업 진흥 및 건전한 공연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새롭게 확보되는 재원이 관련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체계적이고 목적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추가 재원에 편입되는 각 재원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1)과 관련하여서 몰수·추징금을 특정 기금으로 납입 의무화하는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고, 몰수·추징은 법원이 선고하고 검찰이 집행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4)과 관련하여서는 미분배보상금 사용항목 중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기금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22)과 관련하여서 법정배분기관 추가는 법정배분 제도가 복권법 제정(2004년) 이전 복권발행 기관에 대하여 개별 복권 발행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점, 국회·감사원의 법정배분제도 축소·폐지 지속적인 요구,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문예진흥법 제16조)
- **(용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문예진흥법 제18조)
- **(수입원)**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문예진흥법 제17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예산	결산	예산	예산
수입	□ 자체수입	114,737	98,518	93,654	93,623
	○ 건물대여료	1,210	930	865	1,273
	○ 융자금 이자수입	908	1,158	974	921
	○ 적립금 이자수입	4,635	1,661	2,660	3,500
	○ 민간출연금	29,311	21,192	20,727	22,492
	○ 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금	50,296	37,716	36,153	30,034
	○ 입장료및기타잡수입	13,157	18,192	16,931	20,059
	○ 용자원금회수	15,220	17,669	15,344	15,344
	□ 정부내부수입	378,786	378,786	397,707	420,871
	○ 기금전입금	348,786	348,786	367,707	390,871
	체육기금 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110,000
	복권기금 전입금	248,786	248,786	267,707	280,871
	○ 일반회계전입금	30,000	30,000	30,000	30,000
	□ 여유자금회수	86,298	16,026	86,298	118,055
합 계		579,821	493,331	577,659	632,549
지출	□ 사업비	425,560	410,343	433,887	516,371
	○ 예술창작지원	58,814	58,297	64,677	69,118
	○ 예술인력육성	26,573	26,183	22,358	23,897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18,000	18,000	18,000	28,000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907	907	907	780
	○ 지역문화예술지원	-	-	-	-
	○ 예술의관광자원화	4,908	4,908	4,923	4,523
	○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4,169	23,445	27,919	29,341
	○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61,574	280,581	327,638
	○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용자)	-	-	-	20,000
	○ 한스타일육성지원	10,460	10,449	8,924	8,032
	○ 문화예술해외교류	1,753	1,753	910	822
	○ 공예문화산업육성	4,827	4,827	4,688	4,220
	□ 기금운영비	20,656	21,399	23,446	22,981
	○ 인건비	12,708	12,708	13,121	13,684
	○ 기타운영비	7,948	8,691	10,325	9,297
	□ 정부내부지출	20,591	39,233	22,253	22,572
	□ 여유자금운용	113,014	22,356	98,073	70,625